



제428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겸업금지 및 총자산한도
규제 적용 등〉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76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겸업금지 및 총자산한도 규제 적용	3
2. 대부업 관련 정보 게재 사항 구체화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은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10.
3. 회 부 일 : 2025. 3.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부업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대부업자를 금융위원회 등록대상과 지방자치단체 등록대상으로 구분하여 규제 강도에 차등을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어떤 대부업자가 대규모 폰지사기(Ponzi scheme, 신규 투자자의 금전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해당 대부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등록대상이었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규제 공백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을 개선하여 대부거래시장 내 금융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규제 공백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겸업금지요건과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방자치단체 등록대상인 대부업자에게까지로 확대함(안 제3조제5항제6호 신설 및 제7조의3제1항).
- 나. 대부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게재하고 있는 대부업자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6조제3항 각 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겸업금지 및 총자산한도 규제 적용

-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겸업금지 및 총자산한도 규제를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1항제6호 신설, 제7조의3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2호, 제3호, <u>제5호</u>의 요건을 갖출 것 4. (생략)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6.·7. (생략) 제7조의3(총자산한도) ① <u>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u>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3. -----<u>제5호, 제6호</u> ----- 4. (현행과 같음) <u><삭제></u> 6.·7. (현행과 같음) 제7조의3(총자산한도) ① <u>대부업자는</u>----- ----- ----- -----. ② (현행과 같음)
---	---

-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상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1) 둘 이상의 시·도에서营业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려는 자, 3) 법인으로서는 자산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하고 이 중 대부채권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등은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¹⁾.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

□ 현행법상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겸업규제 및 총자산한도 규제가 적용되지만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겸영할 수 없고²⁾, ②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한도가 1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이는 상대적으로 자산보유액이 크고 영업 범위가 넓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도록 차등화하여 규정한 것임.

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는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전자적 장치·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하 “대부중개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 그러나 최근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체의 대표이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폰지사기³⁾를 기획해 불특정다수로부터 1,400억원대 자금을 갈취한 사건⁴⁾이 발생하는 등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내부통제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이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도 대부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한 겸업금지를 적용함으로써 대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도 총자산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배 이내)를 적용함으로써 대부업자의 자본 여력을 초과하는 무분별한 차입 및 그로 인한 과잉·불법추심 예방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등에 대한 겸업금지 규제의 경우 이미 이해상충 가능성,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규제인바, 이를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3) 폰지 사기란 투자 사기 수법의 하나로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함. 폰지 사기는 대부분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보통의 정상적인 투자가 보장할 수 없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하며, 계속해서 기존 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한 투자 형태임.

4) 뉴시스 “PS파인·미래에셋금융 GA, 폰지사기 가담…금감원 “무관용 처벌””, 2025. 3. 2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23_0003109246)

- 2015년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한정하여 겸업제한 규제를 도입했던 시점과 달리 현재에는 각종 플랫폼, 소규모 통신사업 등 전기통신사업이 확대·다양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역시 겸업의 소지가 높아짐.
- 다만, 최근 발생한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폰지사기 사건의 경우 해당 대부업체의 대표이사가 본인이 설립한 별도 GA 법인의 설계사들을 동원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안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GA 등 관련 업종을 겸업제한 업종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업종 겸업이 규제의 적용대상에 포섭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⁵⁾.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겸업금지 규제를 지자체 등록대부업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공감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의

5) 참고로 현재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겸업제한 업종은 대통령령 및 고시에서 구체화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에서도 보험대리업 등을 겸업제한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1(겸업금지업종 등) ① 법 제3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중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5. 그 밖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

「대부업등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10조(등록요건등) ② 시행령 제2조의11제1항제5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말한다.

견 등을 고려하여 법 제9조의5(고용 제한 등)⁶⁾에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임.

- 참고로 현행법 제9조의5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⁷⁾ 또는 「대부업법」 제4조제1항제6호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대부업자의 고용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조제1항은 대부업체의 임원⁹⁾ 및 대주주¹⁰⁾에 관하여는 금융관련법령(「유사수신

-
-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① 대부업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다른 대부업자들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선임된 자
- ② 대부업자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자들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이 법의 규정
 - 나.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자들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포함) 위반 관련 사실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규제의 경우 규제회피 목적의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자의 자본 여력을 초과하는 무분별한 차입 등으로 인한 고금리 수취, 과잉·불법추심을 간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자기자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업자의 재정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지는바,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운영되는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부채규모를 적정 수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1(점업금지업종 등) ③ 법 제3조의5제2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위반 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조의12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준으로 규제할 경우 대부업 시장의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2024년 말 기준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11%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이 10배를 초과하였으며, 10%는 12배를 초과하였음.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현황]

(단위: 개)

구분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수	제출업체 수 ¹⁾	자기자본(순자산) 대비 총자산		
			10배 이하	10배 초과	12배 초과
법인	1,722	1,621	1,009(62.2%)	612(37.8%)	549(33.8%)
개인	5,520	3,948	3,787(95.9%)	161(4.1%)	149(3.7%)
계	7,242	5,569	4,957(89%)	612(11%)	561(10%)

주1) 2024년 하반기 실태조사 자료에 자산 및 자기자본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한 업체 대상

(자료: 금융위원회)

2. 대부업 관련 정보 게재 사항 구체화

-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재하는 대부업 등록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u>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u> ----- ----- ----- -----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이나 폐업에 관한 사항 4. 대부업자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5. 대부업자의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에 관한 사항

□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는 업체명, 등록 유효기간,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기관¹¹⁾ 등을 포함한 대부업 등록 관련 현황을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반기별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게재하고 있음.

○ 개정안은 대부업체 등록뿐만 아니라 그 폐업·등록갱신·변경등록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게재하도록 하여 그 게재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그러나 이미 업체명, 등록 유효기간 등 대부분의 정보가 공시되고 있어 대부 이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상황인바, 폐업·등록갱신 등 정보에 대해서까지 공개할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안 제16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대부업자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에 이미 등록·등록갱신·변경등록·폐업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각각을 별도의 호로 규정할 경우 상호 중복이 될 우려가 있음.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안 취지에 공감하나, 대부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서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하여 대부업 실태조사 항목을 구체화하기보다는 현재 법 제3조제5항에

11) 금융위원회 등록 또는 시·도지사 등록

따라 운영중인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실익이 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이 보장¹²⁾되고 대부회사간 경쟁에 의한 자율정화 여지가 있으므로 제공정보의 확대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08

12) 예컨대 등록사항(고정사업장, 대표자 등)에 대한 통상의 수준을 벗어난 잦은 변경등록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됨.